

변경보고서

1. 변경대상펀드:

-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1호(H)(주식)
-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
-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
- 미래에셋 China A Share 증권 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

2. 변경시행일 : 2013년 4월 13일(토)

3. 변경 내용: 환매기준가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① <u>매달 14일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</u> <u>오</u> <u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</u> <u>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 <u>(나)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</u> <u>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</p> <p>② <u>매달 15일 이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</u> <u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</u> <u>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 <u>(나)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</u> <u>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</u></p>	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① <u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</u> <u>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 <u>(나)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:</u> <u>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</p> <p>②<삭 제></p>

	<p>을 지급합니다.</p> <p>③ 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(가)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: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: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<u>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</p> <p><추 가></p> <p>④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	<p>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(가)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: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: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에게 <u>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u></p> <p><u>(다)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삭 제></p>
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	<p>(5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<u>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(25일이 아닌 경우</u> 	<p>(5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<u>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</u>

	<p><u>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, 이하” 기준일”</u> <u>이라 한다)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</u> <u>와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 사이에 환</u> <u>매청구를 한 경우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	<p><u>매청구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)과 그 권</u> <u>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</u> <u>한 경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
--	---	--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전	변경후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	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p> <p>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<u>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당월 25일 또는 익월 25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단, 해당 국가가 휴무일이거나 환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투자 국가가 휴무일이 아닌 날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u></p> <p>1. 매월 14일 이전 환매 청구시 : 당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</p> <p>2. 매월 15일 이후 환매 청구시 : 익월 25일에 환매대금 지급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,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.</p> <p>가.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 :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</p>	<p>①<좌 동></p> <p>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<u>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)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<이하 삭제></u></p> <p><1호~2호 삭제></p> <p>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, 제50조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.</p> <p>가.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 제한이 발생한 경우: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</p> <p>나.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</p>

	<p>나.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 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: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<u>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월 25일</u></p> <p><추 가>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 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: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 청구 순서를 기준으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자는 <u>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</u></p> <p><u>다.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 투자 국가의 휴무일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이하 좌동></p>
<p>제28조(환매연기)</p>	<p>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</p>	<p>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</p>

	<p>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<u>이 일정한 날은 25일을 기준으로(25일이 아닌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한 영업일, 이하"기준일"이라 한다.) 기준일 이전 전월 15일 이후와</u>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	<p>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<u>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전일)과</u>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 <p>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</p>
--	--	--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